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92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박홍배 · 윤준병 · 한준호
염태영 · 김 윤 · 박 정
박희승 · 송재봉 · 이정현
김한규 · 김태년 · 진성준
민병덕 · 이정문 · 김남희
박지원 · 김남근 · 이주희
김현정 · 김우영 · 박정현
안도걸 · 정진욱 · 서미화
김태선 · 최혁진 · 김원이
부승찬 · 정태호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 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영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를 “임금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
 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
 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
 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
 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
 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
 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임금에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
호에 따른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
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
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
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

<신 설>

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